

## 「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관내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, 대상, 책무에 관한 사항(안제1조 ~ 제4조)
- 나.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제5조 ~ 제7조)
- 다.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제8조 ~ 제11조)
- 라. 준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제12조 ~ 제14조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, 전승활동에 필요한 공연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.

- 조례안의 형식은 4장, 본칙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준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하였으며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.
- 평창군의회 입법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